#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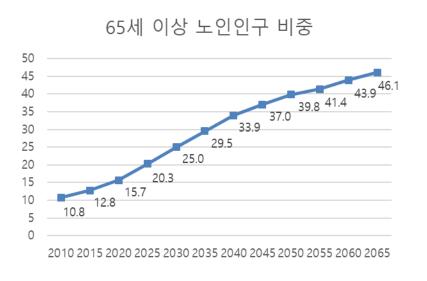
2024, 4, 24

최 재 우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jwchoi2695@hanmail.net

# **CONTENTS**

- 돌봄패러다임 전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③ 의료-<del>돌봄</del> 통합지원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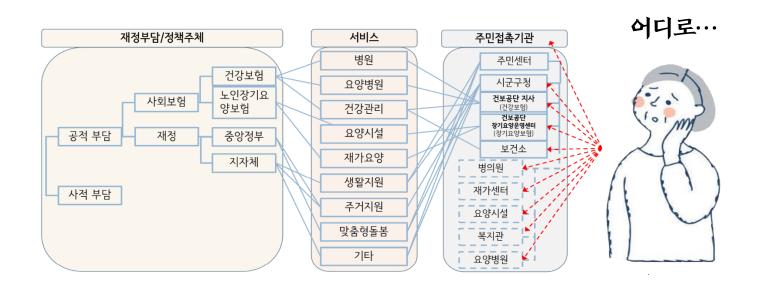
- 1. 추진배경 : 후기노인 증가로 인한 돌봄욕구 계속적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인구: 2018년(14.3%[고령사회]) → 2025년(20.3%[초고령사회])
    → 2065년 46.1%
  - 75세 이상 후기노인 인구: 2017년 5.9% → 2040년 17.4% → 2067년 29.1%





2

- 1. 추진배경 : ② 분절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 기존 대상별/서비스별 분절화된 상담창구(공급자 중심)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필요(이용자 중심)



# Ⅰ <del>돌봄</del>패러다임 전환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수립
  - 2018년 11월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발표함.



\* 자료: 보건복지부(2018.11.20),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관련 언론보도자료

###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제고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을 목표로 선도사업 실시
- 2019년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선도사업 실시(2019~2022년 종료)
  - (대상자) 복지부의 대상자 유형(모델) 제안→ 지역자율적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통합적 제공
  - (재원)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자체 예산

구분	1차 지역	2차 지역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시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부산진구, 부산 북구, 충북 진천, 충남 청양군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del>-</del>
/19정신질환자0B/	A150 ***01경기화성시 121	-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주요 결과

# 분석개요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화 추진 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DB-장기요양보험 DB-사망 DB-자격 DB와 지자체 에서 수집한 대상자 DB 모두 연계하여 자료 분석함.
- ※ 이 연구 결과는 1단계 시범사업(`19~`22)의 효과를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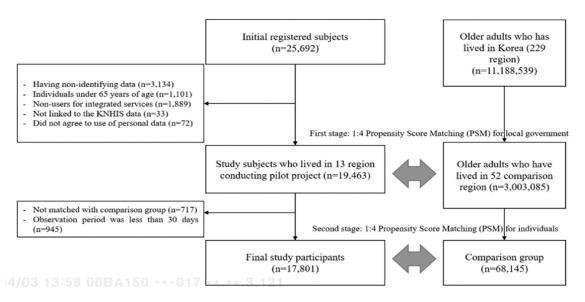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participants.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주요 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Pre-PSM			Po	ost-PSM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pilot project		Older adults who did not participated in pilot project			Older adults who did not participated in pilot project			
Variables	N	%	N	%	SD	N	%	SD	
Total	17,801	20.7	3,003,085	100.0		68,145	79.3		
Sex					0.31			-0.08	
Men	5,318	29.9	1,347,429	44.9		19,218	28.2		
Women	12,483	70.1	1,655,656	55.1		48,927	71.8		
Age (mean ± standard deviation)	79.8	6.6	72.6	7.7	1.09	79.9	6.8	-0.01	
Household income					0.31			-0.04	
Q1 (Lowest)	5,039	28.3	172,117	5.7		18,435	27.1		
Q2	2,787	15.7	563,815	18.8		10,468	15.4		
Q3	2,253	12.7	489,602	16.3		8,425	12.4		
Q4	2,422	13.6	651,630	21.7		9,169	13.5		
Q5 (Highest)	5,300	29.8	1,082,021	36.0		21,648	31.8		
CCI					0.31			-0.04	
0	1,917	10.8	850,742	28.3		7,198	10.6		
1	2,924	16.4	698,596	23.3		11,634	17.1		
2	2,999	16.8	526,164	17.5		11,925	17.5		
3	2,731	15.3	356,147	11.9		10,801	15.9		
4	2,304	12.9	230,398	7.7		8,758	12.9		
5	1,739	9.8	141,107	4.7		6,353	9.3		
6≤	3,187	17.9	199,931	6.7		11,476	16.8		
Inpatient history					0.45			0.03	
Yes	7,833	44.0	704,234	23.5		28,965	42.5		
No	9,968	56.0	2,298,851	76.5		39,180	57.5		
Psychiatric diseases					0.45			0.02	
Yes	7,312	41.1	630,002	21.0		27,210	39.9		
No	10,489	58.9	2,373,083	79.0		40,935	60.1		
Disability					0.39			0.06	
Yes	5,259	29.5	418,805	13.9		18,443	27.1		
No	12,542	70.5	2,584,280	86.1		49,702	72.9		
Grade of long-term care insurance					0.39			0.06	
1–2 grade	224	1.3	50,986	1.7		686	1.0		
3-5 and cognition support grade	2,830	15.9	197,005	6.6		9,684	14.2		
None	14,747	82.8	2,755,094	91.7		57,775	84.8		
Living status					0.71			0.01	
Yes	10,215	57.4	736,471	24.5		39,104	57.4		
No	7,586	42.6	2,251,200	75.0		29,041	42.6		

Abbreviation.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SD: standardized difference,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주요 결과

# 1) 1인당 연평균 재가거주기간 변화 결과

**Table 2.** The results for changes of length of home stay by participation of pilot project for community care.

			Pre-registration	Post-registration	Pre-post differe	ences	DID	
Type <sup>†</sup>	Subjects	N	Mean (STD)	Mean (STD)	Mean (95% CI)	p-value	Mean (95% CI)	p-value
Total	Participants	17,801	349.3 (48.0)	350.5 (49.9)	1.2 (.3, 2.0)	0.008	4.8 (3.6, 6.0)	<.001
	Comparison group	68,145	339.3 (119.7)	335.7 (124.1)	-3.6 (-4.3, -2.9)	<.001		
Home Care Users	Participants	2,226	348.8 (51.9)	348.1 (50.1)	7 (-3.4, 2.0)	0.617	8.9 (4.9, 12.9)	<.001
	Comparison group	8,181	314.1 (160.5)	304.5 (203.9)	-9.6 (-12.4, -6.8)	<.001		
Ineligible	Participants	1,675	357.5 (28.0)	354.0 (41.0)	-3.5 (-5.6, -1.4)	0.001	-3.2 (-7.2, 0.8)	0.120
	Comparison group	6,400	342.0 (154.4)	341.7 (98.0)	-0.3 (-3.5, 2.9)	.849		
Post-Discharge	Participants	1,895	303.3 (81.3)	335.9 (68.2)	32.6 (28.4, 36.7)	<.001	35.2 (30.7, 39.8)	<.001
	Comparison group	7,175	324.7 (135.4)	322.0 (127.8)	-2.7 (-4.4, -0.9)	.003		

Abbreviation. LTCI: long-term care insurance, STD: standard deviation, DID: difference-in-differences, CI: confidence interval.

<sup>&</sup>lt;sup>†</sup>Home Care Users: LTCI beneficiaries who used home care services, Ineligible: Older adults who applied for LTCI but were rejected or intensive care group of elderly customized care services, Post-Discharge: Patients who discharged from medical institution.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주요 결과

# 2) 1인당 연평균 총비용 변화 결과

Table 3. The results for changes of yearly average total costs of social insurance per individual by participation of pilot project for community care.

			Pre-registration	Post-registration	Pre-post differen	Pre-post differences		DID	
Type <sup>†</sup>	Subjects	N	Mean (STD)	Mean (STD)	Mean (95% CI)	p-value	Mean (95% CI)	p-value	
Total	Participants	17,801	7,558 (10127)	7,606 (11739)	48 (-123, 220)	0.582	-956 (-1157, -754)	<.001	
	Comparison group	68,145	6,837 (10493)	7,840 (14326)	1004 (917, 1091)	<.001			
Home Care Users	Participants	2,226	11,485 (9492)	12,021 (11047)	536 (85, 987)	0.020	-1177 (-1701, -653)	<.001	
	Comparison group	8,181	11,714 (13375)	13,428 (16412)	1713 (1450, 1976)	<.001			
Ineligible	Participants	1,675	5,339 (6592)	6,239 (9440)	900 (465, 1335)	<.001	-69 (-566, 429)	0.787	
	Comparison group	6,400	5,819 (9028)	6,788 (12335)	968 (728, 1208)	<.001			
Post-Discharge	Participants	1,895	17,101 (16898)	11,029 (16712)	-6073 (-6944, -5201)	<.001	-6947 (-7909, -5985)	<.001	
,	Comparison group	7,175	8,899 (12526)	9,773 (20393)	874 (481, 1267)	<.001			

Abbreviation. LTCI: long-term care insurance, STD: standard deviation, DID: difference-in-differences, CI: confidence interval.

<sup>†</sup> Home Care Users: LTCI beneficiaries who used home care services, Ineligible: Older adults who applied for LTCI but were rejected or intensive care group of elderly customized care services, Post-Discharge: Patients who discharged from medical institution.

# Ⅰ <del>돌봄</del>패러다임 전환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주요 결과

# 3) 우선관리대상군별 outcomes

**Table 4.** The results for outcomes by subgroups in pilot project for community care.

Type <sup>†</sup>	Outcomes	Subjects	N	Events	HR	95% CI	<i>p</i> -value
Home Care Users	Admis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omparison group	8,181	1,090	1.00		<.001
		Participants	2,226	71	0.22	0.17-0.28	
Ineligible	Entry into LTCI	Comparison group	6,400	312	1.00		<.001
		Participants	1,675	203	2.52	2.11-3.01	
Post-Discharge	Hospital readmission by same diseases after hospital	Comparison group	7,175	275	1.00		<.001
	discharge	Participants	1,895	251	3.53	2.98-4.19	

Abbreviation. LTCI: long-term care insurance,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up>&</sup>lt;sup>†</sup>Home Care Users: LTCI beneficiaries who used home care services, Ineligible: Older adults who applied for LTCI but were rejected or intensive care group of elderly customized care services, Post-Discharge: Patients who discharged from medical institution.

# 5.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2023~2025년)

- (주요 방향) 요양병원(시설) 이용, 장기요양 제도권 진입을
  앞둔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의료-돌봄 연계체계
  고도화
- (시범사업 수행기간) '23. 7월~'25.12월
  - 시범사업 지자체 결정 ('23, 3월초)
  - 시범사업 시행준비(3~6월)
  - 시범사업 시행(7월~)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2개소
  - 경기도 2개소
  -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대전시 2개소
  -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광주시 2개소
  - 경북 1개소, 경남 1개소
- (예산) '23년 기준 35억 4천만원. 교육비 3억원 포함. 지 자체별 특화프로그램 시행과 시도 협업 등의 상황에 따라 2-3억 범위에서 예산을 차등지급 할 예정
  - 기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노인보건복지 관련 시범사업 예산 활용 예정



# 6.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02.29)

-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 제공'을 '통합 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도 포괄
-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 법에 우선함,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 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시군구청
  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행
- 의료 요양필요도 등 종합판정, 안내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 •
  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del>돌</del>봄, 가족 등 지원
  - 서비스 내용에 주거지원 내용 포함
- 통합지원협의체 및 시군구 전담조직 운영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
- 전문인력, 전문기관 운영
- 시범사업 시행, 비용지원 등,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살던 곳서 오래 건강하게…'지역 통합돌봄' 강화 법적 근거 마련

長等 2024.02.29 17:51:19 四 용 원 가 가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등 국가 책무 강화 [열린세상] 지역 돌봄 통합지원, 초고령사회의 주춧돌 6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 25% 차지

6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 25% 차지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은 '필수' 재택 의료, 장기요양보험 기반 다져야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국가소 말의 아두운 그림자가 대 한민국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형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상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7.7% 감소해 처음으로 23만명 일으로 떨어졌다. 참계출산율은 0.72명이며, 물해 0.6명 대를 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제협약개발가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물이 1명을 밀도는 나라는 하공이 유일하여, 2021년 기준 OFCD 평가 158명의 집반 수준이다.

# 7.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2024.05~)

■ 기존 12개 시범사업 지역 외 지자체 중 18개를 공모하고 선발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선발된 지자체는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del>돌봄 통</del>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실시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4.16~4.24) -

보건복지부(장관 <u>소규홍</u>)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 \*\*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 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C** report

2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 보건복지부(202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참고
- 유애정 외(2023),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1차년도)의 일부 결과 발췌

# II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 추진목표 및 원칙

- 요양병원(시설) 이용, 장기요양 제도권 진입을 앞둔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의료-돌봄 연계체계 고도화
  - 보건-복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자의 지역복귀 유도
  - 기본 모형을 검증하면서 제도 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항들 탑재 노력, 커뮤니티케어 확산 방안 도출 및 단계적 추진(제도개선 추진, 관련 법 제·개정 근거 마련, 지속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 시범사업 운영목표 명확화

- 요양병원 및 시설 이용 지연을 위한 지역내 의료-돌봄 연계제공체계 구축
- 기존 제도의 개선과제, 신규 추진과제 도출

#### 중앙-지자체 역할

-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 운영모델 제시
- 기본적인 시범사업 운영모델에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도화

#### 재정 활용

 각 제도권(건강, 장기요양, 노인보건복지)의 서비스 내용을 연계하여 우선 제공하고,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 활용

#### 지원기반 확충

-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체계 강화, 전문지원단 운영
- 근거기반 성과결과 도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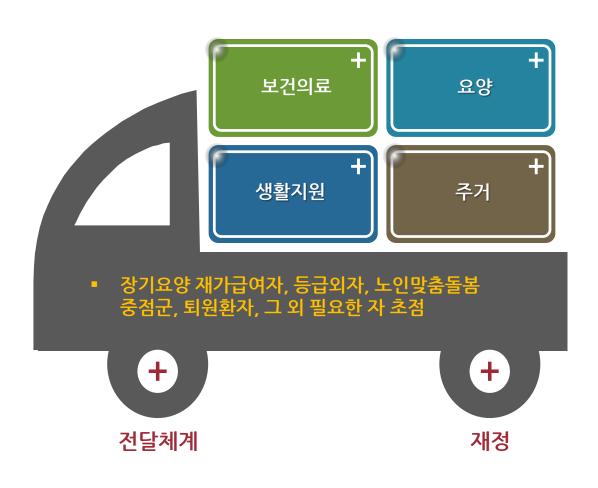
# II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② 대상자

- 시범사업 추진목표 명확화에 따른 돌봄필요자 범위 및 기준을 표준적으로 제시
  - 7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병원(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전체 대상자 중 70% 이상)
  - (우선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40%), 장기요양 등급외자 A,B 및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미인정자(20%), 퇴원환자(병원퇴원 이후 2주 이내 환자, 10%) 중 의료-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
  - 그 외 일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자 발굴체계 다양화
  - 통합지원창구 운영(읍면동 주민센터)
  - 통합안내창구(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노인맠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DB)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 시범사업 준비초기 지자체 내 75세 이상 우선 대상자(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 및 상태 확인
- 대상자 돌봄필요도 사정
  - 선별조사도구를 활용한 돌봄필요도 확인
  - 돌봄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심화평가(필요도조사) 실시(본청 노인통합지원센터 총괄, 통합지원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지원, 필요 시 건보공단 담당자 공동조사 실시)

# II 노인 의료<del>-돌봄</del>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❸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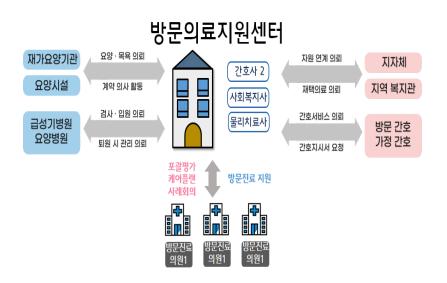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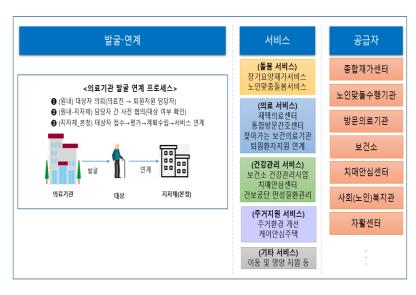
- 방문의료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방문의료 지원센터)
- 퇴원환자지원체계 구축
- 건보공단 관련 사업 연계 등
-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sup>1</sup>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연계
- 생활지원서비스(가사지원/이동/ <sup>™</sup> 식사지원 등) 제공(노인맞춤돌봄 고도화 연계)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연계
- 주거환경개선 확대
- 케어안심주택(주거+돌봄서비 + 스) 확충

# II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4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방문의료, 퇴원환자지원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모델 적용(복지부 시범사업, '22. 12월~'23.11월)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대상자 중심
  -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참여. 포괄평가-계획수립-서비스 제공(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팀사례회의-지역자원연계 수행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 운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체계
- 장기요양 미인정자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도입 및 적용
  - 방문의료지원센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내 방문진료기관 지원 및 협력
-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지자체 간 연계체계 강화 (중간집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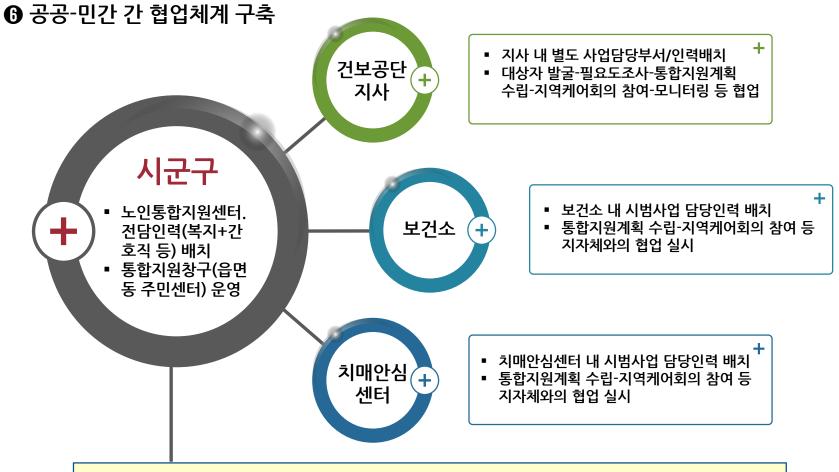


# II 노인 의료<del>-돌봄</del>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⑤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 주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장기요양 재가노인 재가요양 생활지원 방문의료 주거지원 ■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지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재가노인(장기요양 진입 전) 노인맞춤 생활지원 방문의료 주거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 진입 지연 돌봄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퇴워화자 노인맞춤 생활지원 방문의료 주거지원 ■ 원활한 재가생활 복귀+정착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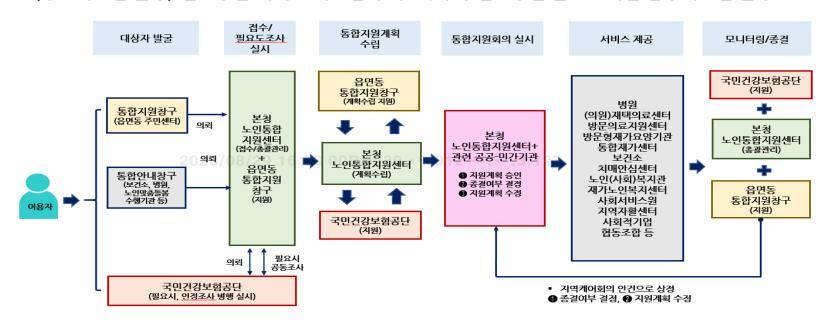
# II 노인 의료<del>-돌봄</del>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방문의료서비스기관(의원 등)의 관계자 간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복지관 등) 등 서비스 제공기관 내 담당인력 배치 →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역 케어회의 지속적인 참여
- 지역내 주민조직, 공동체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 비공식자원 활성화

# II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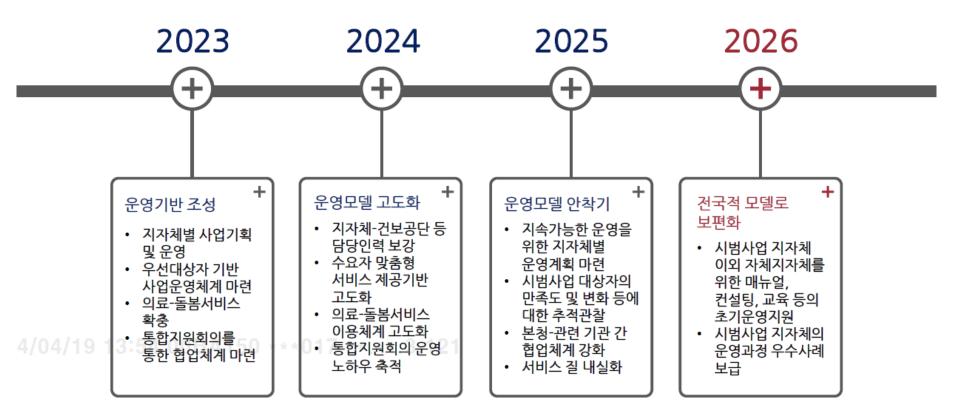
- 지자체 총괄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협업 활성화
- (운영절차) 대상자 발굴/접수 → 필요도조사(선별/심화) → 통합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실시 → 서비
  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종결
  - (본청 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운영전반 총괄관리, 통합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 (통합지원창구) 신규대상자 상담 및 선별조사, 필요도조사 등 본청업무 지원, 읍면동 내 서비스 연계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제 발굴, 통합안내창구 업무수행, 지자체 통합지원회의 지원 등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 통합지원회의 참여, 서비스 제공 등
- (정보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내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건보공단 간 ICT 기반 업무시스템 운영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업무지침(2023)의 절차도를 재구성함

# II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초기운영과정 실적데이터, 전반적인 운영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 12개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운영과정 기반 구축은 이뤄진 듯
  - 지자체별 사업기획 및 운영, 우선대상자 기반 사업운영체계 마련,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마련 등 초기운영과정의 주요 추진요소 충족
- 2026년 전국적 모델로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2024년-2025년은 운영과정의 내실화 추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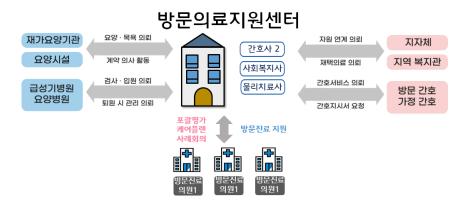


**CC** report

3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1.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모델 다양화 … 통합지원법 제 15조(보건의료) 관련
    - 거동불편자 대상 다학제 팀 기반 포괄적·연속적 방문의료서비스 활성화 필요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1% 내외 참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다학제 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표준적인 프로토콜 기반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사항
      - 포괄적·연속적 서비스 보상체계 마련(포괄평가, 계획수립, 팀사례회의, 지역가산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보상체계(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방문진료 보상 대상기관 확대(공공보건의료기관), 방문진 료료 본인부담 경감, 대리처방 시 방문진료 의무화, 방문의료교육 및 실습 과정 편성, 거동불편자 가정 내 현장 처방 허용 등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1.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모델 다양화 … 통합지원법 제 15조(보건의료) 관련
    - (1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 한 기관 내 다학제 팀 근무형태
      - (대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수가는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 우선])
      - (주체)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 (서비스) 포괄평가-계획수립-서비스 제공(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팀사례회의-지역자원연계 수행
      - (인력, 재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 운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체계 적용
  - (2형)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모델 방문진료기관(의사) + 방문의료지원센터(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배경)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내 간호사, 치료사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존재함.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대안적 모델
    - (주체) 방문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그 외 서비스는 방문의료지원센터(공공보건의료기관 내 설치)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 통합지원법 제 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관련
  - 1) 우리나라 퇴원환자 지원 시범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및 대상기관	대상환자	서비스 내용	재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20.12~)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뇌혈관 질환자 및 중추신경계 뇌손상 환자	1) 초기(선별)평가, 2) 연계활동이필요 한 환자 통합평가, 3) 퇴원계획 수립, 4) 지역사회 연계	건보수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19.11~) 요양병원	입원 후 120일 경 과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필요자	1) 대상자 선별조사, 2) 심층평가, 3) 퇴원지원 표준계획, 4) 지역사회 연계	건보수가
재활의료기관수가 3단계 시범사업	(`17.10~) 재활의료기관	중추신경계 또 는 근골격계 질환자	1) 통합치료 계획 수립, 2)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3) 치료성과평가, 3) 지역사 회 복귀지원, 4) 방문재활치료	건보수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19.02) 공공의료기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 환, 호흡기질환, 관절 수술·골절, 암 등	1) 대상자 선정 및 환자 평가, 2) 케어 플랜 계획 수립 및 환자교육, 3) 지역사 회 연계, 4) 모니터링 · 관리	예산

###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 통합지원법 제 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관련
  - 1) 우리나라 퇴원환자 지원 시범사업 현황
  - 전체 및 65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각 퇴원지원사업별 퇴원지원 단계별 실적(`22.01~`22.12)

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구분 사업참여 의료기		사업 참여 환자 수		평가		퇴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1正	관 수	N	%	N	%	N	%	N	%	
전체	18	1,611	100.0	1,611	100.0	1,393	86.5	239	17.2	
65세 이상	10	972	100.0	972	100.0	845	86.9	140	16.6	

2. 재활의로	로기관 수가 시범시									
구분	급 사업참여 의료기		사업 참여 환자 수		평가		퇴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一一一	관 수	Ν	%	N	%	Ν	%	Ν	%	
전체	45	15,968	100.0	15,968	100.0	12,365	77.4	413	3.3	
65세 이상	45	10,356	100.0	10,356	100.0	8,083	78.1	25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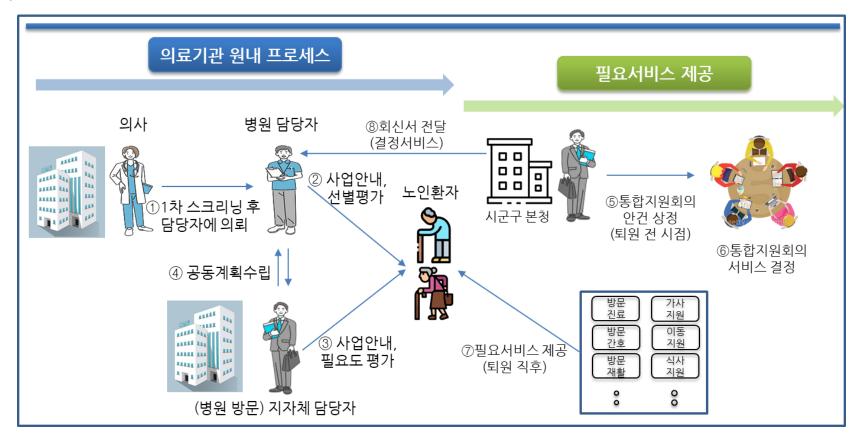
3. 요양병원	<sup>면</sup> 퇴원환자 지원제	l도					
구분 사업참여 의료기		사업 참여 환자 수		평가		지역사회 연계(퇴원계획 포함)	
十七	관 수	N	%	N	%	N	%
전체	59	487	100.0	487	100.0	88	18.1
65세 이상	39	380	100.0	380	100.0	72	18.9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 통합지원법 제 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관련
  - 2) 퇴원환자 지원 개선방안

#### 퇴원환자 지원 프로세스

- (사업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입원환자 중 퇴원 후 통합 지원이 필요한 자
- (1단계: 상태 평가) (1차) 환자 입원 시 의사는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 수행(예: 캐나다에서 개발한 임상노쇠판정도구를 활용할 경우 건강 및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음), (2차) 사업담당자는 의사로부터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거동불편 및 주돌봄자 상주 여부 "를 평가하여 퇴원 후 통합 지원이 필요한 자를 결정함(선별 평가).
- (2단계: 필요도 평가) 지자체 본청 내 의료-돌봄 통합지원 담당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퇴원예정환자 대상 필요도 평가를 수행함.
- \* 환자 실거주지가 의료기관 소재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 통합지원 담당자에 연계하고 필요 시 비대면을 통해 공동 계획 수립 수행 가능
- (3단계: 계획 수립) 의료기관 담당자와 지자체 본청 담당자가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함.
- \* 계획 수립 시 퇴원 직후 환자생활계획(생활습관 개선, 약물복용 등)과 의사소견(주요 치료 내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
- (4단계: 서비스 결정) 지자체 담당자는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함.
- (5단계: 서비스 연계) 지자체 담당자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
- (6단계: 회신서 전달) 지자체 담당자는 결정된 서비스 내용을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회신서 형태로 전달함.

- 통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제
- 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 통합지원법 제 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관련
  - 2) 퇴원환자 지원 개선방안



### 2 통합지원 대상

■ 통합지원 대상에 따른 서비스·전달체계 모델 정립 ··· 통합지원법 제 2조(정의) 관련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 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현 정부의 시범사업은 노인(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어떤 대상으로 할지,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달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❸ 정보시스템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통합지원법 제 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 현 정부의 시범사업은 건보공단에서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정보와 평가 결과, 서비 스 제공 계획, 모니터링 결과 등의 정보를 탑재하고 있음.
- 향후 전국화 시기에 활용할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할 정보 항목과 이용 권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④ 지자체 평가 ··· 통합지원법 제 28조(비용 지원 및 부담 등) 관련

-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상 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차등 지원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6 지속 가능성 제고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컨셉은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의료돌봄
 의 통합적 지원을 수행함.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수준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THANK YOU